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997 발의연월일: 2022. 8. 24.

발 의 자:김병기·강준현·김주영

문진석 · 소병철 · 소병훈

신현영 · 이개호 · 이동주

장경태 · 정일영 · 홍기원

홍영표 · 황운하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폭우, 산불 등 재난의 양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, 그로 인한 피해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. 특히, 최근 국지성 호우로 수도권 지역에서 막대한 수해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.

수해 등의 피해는 자연으로부터 기인하나, 배수펌프가 가동되지 않 거나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하는 등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, 업무태만이 영향을 미친 인재(人災)에 해당하 는 경우도 많음.

그러나, 현행법상 재난피해 지원금은 물가상승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금액이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및 확대 에 책임이 있더라도 피해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피해 를 배상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임. 현행법은 재난피해자가 재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해를 온전히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가혹한 제도적 허점이 있음.

이에 최소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,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심사하여 그 피해액의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제66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3항 중 "있다"를 "있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6 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자연재난 등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	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
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생 략)	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	3
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	
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	
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	
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	
<u>있다</u> 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	있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	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
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	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
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	피해기업에 발생한 재산상 손
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	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
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	수 있다
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	
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	
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	
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